



Baring Asset Management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CONFIDENTIAL

Policy Owner: BAMK ISPS

Last reviewed: June 19, 2019

Version: 1.1

목차

제 1 조(목적)	3
제 2 조(적용범위)	3
제 3 조(수수료의 종류)	3
제 4 조(수수료 부과 기준) (개정 2019.06.19).....	4
제 5 조(수수료의 부과 절차) (개정 2019.06.19).....	4
제 6 조(설명의무)	5
제 7 조(투자광고)	5
제 8 조(수수료의 인상)	5
제 9 조(공시 등)	5
제 8 조(기준의 제정 및 개정)	6
부 칙<2009.2.4>	6
제 1 조(시행일)	6
제 2 조(경과조치)	6
부 칙<2019.06.19>	6
제 1 조(시행일)	6

제 1 조(목적)

이 기준은 베어링자산운용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고 한다)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 58 조(수수료)에 근거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(이하 “관련 법규”라고 한다)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(수수료의 종류)

이 기준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및 일임계약·자문계약에 적용되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.

1. 보수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.
 -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 - 나. 판매보수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 - 다. 신탁업자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 -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 - 마. 성과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금전(법 제86조, 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규약에 정의된 경우에만 수령 가능)
2. 수수료
 - 가. 판매수수료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

- 나. 환매수수료: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.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됨
- 다.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(성과수수료 포함)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 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투자자문 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에 따라 지급됨

제 4 조(수수료 부과 기준) (개정 2019.06.19)

-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,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
- ③ 법 제229조에 따른 동일 유형이면서 동일한 투자전략을 사용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동일한 모집합투자기구를 동일한 비율로 투자하는 공모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 및 기타 구조적인 차이로 인하여 수수료에 차등을 둘 수 있다. 특히,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판매회사,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제3자가 수수하는 수수료의 경우 시장환경의 변화, 수수료 수수 당사자와의 논의 등에 따라 수수료에 차등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상품개발책임자는 수수료 승인 과정에서 해당 사유에 대하여 설명한다.

제 5 조(수수료의 부과 절차) (개정 2019.06.19)

- ① 회사는 신상품(집합투자기구, 투자일임계약 및 투자자문계약을 포함한다)의 개발 및 기존 상품의 연장 및 변경 등에 대한 검토와 승인 등 운용계약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Korea Product & Services Committee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서 수수료의 부과에 대해 심의 및 의결 한다. 단,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, 투자일임계약 및 투자자문계약 등 투자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수수를 결정하는 경우,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에서 수수료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,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

- ④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의 경우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에 수수료계산방법, 수수료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.
- ⑤ 상품개발담당자는 수수료 부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기 전, 제4조의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한다.
- ⑥ 컴플라이언스는 매 반기별로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에 대하여 제4조의 수수료 부과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모니터링한다.

제 6 조(설명의무)

회사는 법 제 47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3 조에 따라,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 7 조(투자광고)

회사는 투자광고(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 57 조제 2 항 및 법 시행령 제 60 조제 1 항에 따라,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8 조(수수료의 인상)

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및 정관,투자일임계약과 투자자문계약 등을 변경하여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.

- ①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법에서 정한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혹은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
- ② 일임 및 자문계약의 경우는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제 9 조(공시 등)

- ①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업자별로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게 한다.

제 8 조(기준의 제정 및 개정)

이 기준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정 및 개정된다.

부 칙<2009.2.4>

제 1 조(시행일)

이 기준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

이 기준에 불구하고,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이 기준 시행 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<2019.06.19>

제 1 조(시행일)

이 기준은 2019 년 6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.

CHANGE HISTORY

No.	Version	Description of changes	Date	Author
1	1.0	New Policy	04/02/2009	H.C. Jung
2	1.1	FSS guidance 반영	19/06/2019	Don Ahn